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우편번호/06594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02)530-3114 전송/02-530-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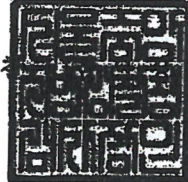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8. 11. 13.

수 신 법무법인이공

발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형제62064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참여연대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김관진
	④ 주민등록번호	●●●●-1*****
⑤ 죄 명		별지 참조 PROSECUTION SERVICE
⑥ 처 분 검 사		노만석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11. 7.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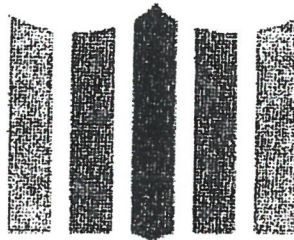
다.내란예비[분리종결일자](20181107)

라.내란음모[분리종결일자](20181107)

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분리종결일자](20181107)

[처분요지]

다,라,자[분리종결일자](20181107)-참고인증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우편번호/06594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02)530-3114 전송/02-530-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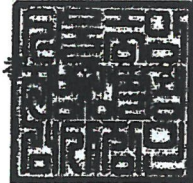
불기소이유 및
문서번호

2018. 11. 13.

수 신 법무법인이공

발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형제62064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참여연대 외 5명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한민구
	④ 주민등록번호	●●●●-1*****
⑤ 죄 명		별지 참조 검찰 PROSECUTION SERVICE
⑥ 처 분 검 사		노만석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11. 7.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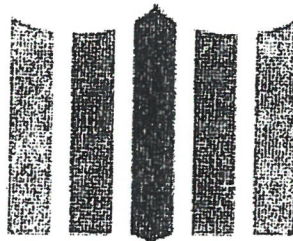
다.내란예비[분리종결일자](20181107)

라.내란음모[분리종결일자](20181107)

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분리종결일자](20181107)

[처분요지]

다,라,자[분리종결일자](20181107)-참고인증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우편번호/06594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02)530-3114 전송/02-530-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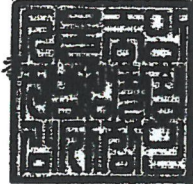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8. 11. 13.

수 신 법무법인이공

발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8형제62064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참여연대 외 5명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박홍렬
	④ 주민등록번호	●●●●-1*****
⑤ 죄 명		별지 참조 PROSECUTION SERVICE
⑥ 처 분 검 사		노만석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11. 7.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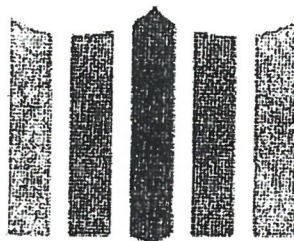
다.내란예비[분리종결일자](20181107)

라.내란음모[분리종결일자](20181107)

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분리종결일자](20181107)

[처분요지]

다,라,자[분리종결일자](20181107)-참고인증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편번호/06594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전화/02)530-3114 전송/02-530-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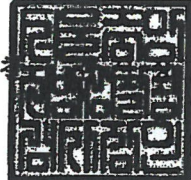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8. 11. 13.

수 신 법무법인이공

발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참여연대 (외) 5명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 명	조현천
	④ 주민등록번호	●●●●● 1*****
⑤ 죄 명		별지 참조 PROSECUTION SERVICE
⑥ 처 분 검 사		노만석
⑦ 처 분 년 월 일		2018. 11. 7.
⑧ 처 분 요 지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문서확인번호 2154-2075-7680-6000

발행번호 2-210-2018-229868

[적 명]

가.반란수괴예비[분리종결일자](20181107)

나.반란수괴음모[분리종결일자](20181107)

다.내란예비[분리종결일자](20181107)

라.내란음모[분리종결일자](2018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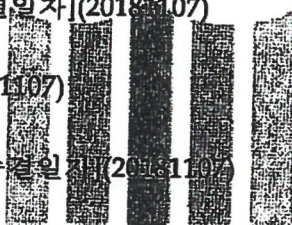
마.업무상횡령[분리종결일자](20181107)

바.허위공문서작성[분리종결일자](20181107)

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분리종결일자](20181107)

아.정치관여[분리종결일자](20181107)

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분리종결일자](20181107)



[처분요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가,나,다,라,마,바,사,아,자[분리종결일자](20181107)-기소증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RFID 라벨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 사 장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공소 시효		장기 단기		재 기		보 존		제 질 제 호 년	
2018년 형제58080, 58976, 59388, 62064, 80063, 89405, 91540호			결 정			2018. 11. 7.			검사			노 만 석									
피 의 자			죄 명			주 문															
별첨참조			별첨참조			1.2.3.4.5.6.8. 참고인증지 7. 기소중지															
불기소결정서는 별지와 같음																					
부 수 처 분 석방지휘/소제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명 령		집 행		인							
압 수 물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재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명 령		집 행		인							
별첨참조																					
비 고																					
집행				사건				압수				결과통지									

[별첨첨부]

피 의 자

1. 다,라 박근혜
2. 다,라 황교안
3. 다,라,자 김관진
4. 다,라,자 박홍렬
5. 다,라,자 한민구
6. 다,라 장준규
7. 가,나,다,라,마,바,사,아,자 조현천
8. 다,라 성명불상

죄 명

- 가. 반란수괴예비
- 나. 반란수괴음모
- 다. 내란예비
- 라. 내란음모
- 마. 업무상횡령
- 바. 허위공문서작성
- 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아. 정치관여
- 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압 수 물 처 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11. 7.

사건번호 2018년 형제58080호, 58976호, 59388호, 62064호, 80063호, 89405호, 91540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노만석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1. 다,라 박근혜
2. 다,라 황교안
3. 다,라,자 김관진
4. 다,라,자 박홍렬
5. 다,라,자 한민구
6. 다,라 장준규
7. 가,나,다,라,마,바,사,아,자 조현천
8. 다,라 성명불상

II. 죄 명

- 가. 반란수괴예비
- 나. 반란수괴음모
- 다. 내란예비
- 라. 내란음모
- 마. 업무상횡령
- 바. 허위공문서작성

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아. 정치관여

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III. 주 문

1. 피의자 박근혜에 대하여 참고인증지한다.
2. 피의자 황교안에 대하여 참고인증지한다.
3. 피의자 김관진에 대하여 참고인증지한다.
4. 피의자 박홍렬에 대하여 참고인증지한다.
5. 피의자 한민구에 대하여 참고인증지한다.
6. 피의자 장준규에 대하여 참고인증지한다.
7. 피의자 조현천에 대하여 기소증지한다.
8.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 참고인증지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조현천, 피의자 한민구, 피의자 장준규, 피의자 김관진, 피의자 박홍렬, 피의자 박근혜, 피의자 황교안, 피의자 성명불상자(“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대표, 2017 대통령 탄핵요구 촛불집회 진압 계엄령 계획 관련자)는 구홍모, 소강원(이상 2인에 대해 같은 날 군검찰에서 구홍모는 혐의없음, 소강원은 참고인증지 처분) 등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로 약칭함)를 통해 병력을 이용한 집회시위 해산, 국회 및 사법부 무력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령과 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준

비하여 내란음모 및 내란예비

가. 고발인들의 주장

- 고발인 군인권센터는 피의자 조현천이 소강원과 공모하여,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중북세력의 선동으로 과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위헌법령인 위수령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국회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방해하려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계획하였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권을 악용하여 야당지도자를 비롯한 시위주동자를 체포하고 언론을 통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엄임무수행군이라는 미명 하에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및 특전사를 전국 각지에 파견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하는 등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등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내란음모 및 내란예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고발인 [REDACTED] 등은 피의자 황교안, 피의자 김판진, 피의자 한민구, 피의자 조현천, 피의자 박근혜, 피의자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대표'가 소강원과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고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와 무장병력 4,800여명 등을 동원하고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를 계획하고, 보도검열단 등으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단순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워 내란예비 및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친위구테타를 계획한 것이고,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 계엄령 선포 등 구호를 외치고 기무사가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내란예비 및 내란음모가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고발인 ████████은 피의자 김관진, 피의자 한민구, 피의자 조현천, 피의자 장준규, 피의자 '2017 대통령탄핵요구 촛불집회진압 계엄령 계획 관련자'가 구홍모, 소강원과 공모하여, 계엄령 선포 주무기관은 합동참모본부임에도 기무사가 2017. 3.경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하려고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작성하여 탱크 200대 및 무장병력 4,800명 등 계엄 선포시 투입될 군 전력까지 명시하여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아닌 군 내 비선 조직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친위구테타 계획을 수립하고, 탄핵기각시 이에 반발하는 집회·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해 주요 인사를 검거하여 사법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동자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함에도 적극적 제지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내란예비 및 내란음모 범행을 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고발인 참여연대 등은 피의자 김관진, 피의자 한민구, 피의자 박홍렬, 피의자 조현천이 소강원과 공모하여,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기무사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수령과 계엄령 발령에 대해 2016. 11. 3.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안보실,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등과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으로 대응수위를 점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헌정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위수령 단계부터

증원부대를 특정하고 임무를 설정하였으며 계엄사령부 및 계엄임무수행군 편성까지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위수령 발령 요건과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집회·시위를 마치 중복세력에 의한 사회혼란 등으로 전제하고 군 병력을 통해 현정을 중단시킬 것을 계획하였으므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예비·음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 2016. 11. 3.경부터 11. 4.경까지 기무사에서 작성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3건의 문서에 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러한 문서가 소강원과 조현천에게 보고된 사실,
- 조현천이 2017. 2. 10.경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나고, 2017. 2. 17.경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종료 후 별도로 한민구를 만났던 사실,
- 이후 조현천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에서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라는 위장 T/F를 조직하여 2017. 2. 17.경부터 3. 3.경까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T/F 종료 이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전경일의 USB에 보관되어 있던 문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및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의미하고, 이하 '본건 계엄 문건'이라 약칭함) 등을 작성한 사실,
- 조현천은 2017. 2. 28.경 20사단장, 2017. 3. 27.경 8사단장을 만났고, 위사단은 본건 계엄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실,
- 조현천이 2017. 3. 3.경 국방부에서 한민구에게 소강원, 기우진을 비롯한 위 T/F가 작성한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하였고, 보고 당시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8쪽)과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였던 사실,

- 이후 군기수사과 백인천이 위 문건이 저장된 USB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5. 10.경 기무사 온라인시스템에 위 문건의 이름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변경하여 훈련비밀로 등재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하였고 방첩정책과장 전경일이 이를 결재하였지만, 비밀등재를 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본건 계엄 문건이 훈련비밀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
- 본건 계엄 문건에는 계엄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참석 대상에 국방부훈령 상 참석대상이 아닌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참석대상에 포함되고 그 외 참석대상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 본건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비상사태로 보기 부족한 상황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입법·행정·사법·언론 등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
- 현행 계엄 관련 계획에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본건 계엄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2016. 10.경 김관진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를 한 바 있고, 육군본부 작전과에서도 2017. 2.경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직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었던 사실,
- 본건 계엄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 방안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국회의원 대상 현행법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에서는 2016. 10.경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10인 이상 의원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절하는 방안, 위원회에서 의결을 지연시키는 방안,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위원들의 무제한 토론 요구를 통해 의결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 위수령 관련하여 이철희 의원의 2016. 11.경 및 2017. 2.경 요청에 따라 답변을 준비하면서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에서 위수령의 존폐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음에도 본건 계엄 문건에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출동 승인을 할 수 없으므로 병력출동 승인은 육군참모총장 외에 합참의장 및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시행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는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며,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제정 시도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정 기간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본건 계엄 문건이 작성되기 이전인 2016. 11.경 수도방위사령부에서 '○○○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이 작성되었고, 이 계획에는 시위대의 ○○○ 경내 진입시를 대비한 작전계획이 수록되어 있고 이와 같은 계획서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내란음모 및 내란예비 성립 여부

○ 주요 법리

- 형법 제90조, 제87조가 정한 내란음모 및 내란예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② 폭동을 ③ 음모 또는 예비하여야 하고,
-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 합의의 내용으로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 합의의 정도로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고, ㉢ 이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4도10978 판결은 이러한 실질적인 위험성 판단 요소로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언급하고 있음),

- 내란예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음모보다 더 나아가 물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등 참조).

○ 내란음모 및 내란예비 성립에 대한 판단

- 본건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비상사태로 보기 부족한 상황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입법·행정·사법기관 등을 통제하려 한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고, 본건 계엄 문건에 나타나는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 및 구체적인 수행방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할 경우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일응 보인다.
- 내란음모와 관련하여, ㉠ 조현천이 소강원, 기우진을 비롯한 위 T/F를 통해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하여 한민구에게 보고하였고, ㉡ 위수령 및 계엄의 구체적 수행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등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

- 되어 있고 주요 사항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가 된다고 일응 보이나,
 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미의 합의인지, ㉕ 이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한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 더 나아가 물적 준비행위까지 있었는지 여부도 조현천의 구체적 진술을 듣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개별 피의자별 판단

○ 피의자 조현천

- 피의자가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한 후 한민구에게 보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건의 내용처럼 계엄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미의 합의였는지, 이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물적 준비행위까지 있었는지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자인 피의자로부터 본건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 이유, 목적, 추가 준비행위 또는 중단 여부, 다른 피의자들과의 구체적 공모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나, 피의자는 2017. 12. 13.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 기소중지한다.

○ 피의자 한민구

- 본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2017. 2. 17.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관에게 검토를 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계엄선포 건의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발언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T/F를 구성하여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되며, 계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인 2017. 2. 22.경 및 3. 6.경 피의자가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 또한, 본건 계엄 문건의 내용처럼 계엄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미의 합의였는지, 이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물적 준비행위까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현천으로부터 본건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 이유, 목적, 추가 준비행위 또는 중단 여부, 피의자와의 구체적 공모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증지한다.

○ 피의자 김관진

- 피의자는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고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본건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의자는 2016. 10.경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은 본건 계엄 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당시 기무사 수사단장이었던 기우진은 조현천으로부터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본건 계엄 문건에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의자와 조현천 사이에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며, 한편 피의자는 2017. 2. 10.경 청와대를 방문한 조현천을 만난 사실도 확인된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증지한다.'

○ 피의자 장준규

- 피의자는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고 조현천으로부터 본건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기무사에서 조현천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하였던 2017. 2.경 무렵, 육군본부에서도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계엄사령부 직제를 검토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는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조현천이나 예하 기무부대장 등을 수 차례 만났음에도 무슨 내용의 보고가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증지한다.

○ 피의자 박홍렬

- 피의자는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고 조현천으로부터 본건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군을 동원한 집회·시위 대비의 일환으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2016. 11.경 ○○○ 특정지역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침입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청와대 관계자가 보고받았으며, 피의자는 군과의 관계조차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합참 지휘통제실 상황 일지'에 의하면 피의자가 청와대 경호와 관련하여 군에 지침(기본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지고 해 나가되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 책임 지역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시달한 정황도 확인되고, 본건 계엄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 단계부터 청와대에 군 병력이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피의자는 당시 청와대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으며 청와대를 경비하는 일부 부대의 작전지휘권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청와대 주변의 촛불집회에 대한 위수령 발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며, 피의자 스스로도 재직 중에 조현천이 몇 번 찾아오려고 하였으나
가급적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조현천과의 관련성도 일부 확인된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증지한다.

○ 피의자 박근혜

- 현재까지 피의자가 본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 그러나, 본건 계엄 문건에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등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의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탄핵소추가 기각
되었을 경우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피의자임을 고려했을 때
본건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기무사령관은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조현천과의 사이에 계엄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조현천은 피의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2016. 12. 5.경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증지한다.

○ 피의자 황교안

- 현재까지 피의자가 본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 그러나, 본건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본건 계엄 문건이 작성되어 한민구에게 보고되는 2017. 2.~3.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피의자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본건 계엄 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본건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2017. 3.경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

○ 피의자 성명불상자

- 피의자들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본건 계엄 문건에 관여되었는지, 피의자들과 조현천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였는지 등에 대해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증지한다.

2. 피의자 조현천, 피의자 한민구, 피의자 김관진, 피의자 박홍렬은 소장원, 기우진 (이상 2인은 같은 날 군검찰에서 참고인증지 처분) 등과 공모하여, 2016. 10.경 부터 2017. 3.경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로 하여금 위수령과 계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고발인 주장

- 고발인 군인권센터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이고 이를 시행 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고유업무이므로 기무사가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구 국군기무사령부령(2018. 9. 1. 대통령령 제291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므로 본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고발인 참여연대 등은 기무사가 위수령이나 계엄에 관하여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법령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런 행위를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조현천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에서 위장 T/F를 조직하여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실,
- 계엄 문건이 계획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비상사태로 보기 부족한 상황에서 위수령과 계엄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여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입법·행정·사법·언론 등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

- 국방부의 총무8000 계엄기본계획이나 합동참모본부 계엄시행계획 등에서 계엄이 선포될 경우 기무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수도 있어, 기무사는 합동수사본부의 편성·운영을 비롯하여 계엄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업무 수행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 본건 계엄 문건에는 기무사의 직무 범위라고 보기 어려운 위수령의 실행 및 제한 요소에 대한 극복 방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건의하는 방안,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운영 관련 사항, 계엄임무 수행군 편성 및 임무와 관련된 사항,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

○ 주요 법리

-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이, ②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③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직권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남용하여, ④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야 하고, ⑤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와 상대방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⑥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판단

- 기무사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권한이나 계엄선포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 또는 구 국군기무사령부령(2018. 9. 1. 대통령령 제291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등 참조]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이 조현천의 지시로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상태이나,

- 한민구는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본건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조현천도 우편진술서를 통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 실행계획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요 병력 출동 근거에 해당하는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요건과 효과, 주요 절차와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서면을 통해 검토해 본 것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시위대의 무력 진압이나 국회 무력화 등 불법적인 의도, 즉 실행의지를 가지고 계엄실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한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라. 개별 피의자별 판단

○ 피의자 조현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로부터 본건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 이유, 목적, 추가 준비행위 또는 중단 여부, 다른 피의자들과의 구체적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기소중지한다.

○ 피의자 한민구

- 피의자 한민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현천에게 위수령과 계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의도로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나, 현재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

○ 피의자 김관진, 피의자 박홍렬

- 피의자들은 조현천에게 본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나, 현재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각 참고인중지한다.

3. 피의자 조현천은 소강원(같은 날 군검찰에서 참고인중지 처분)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적법한 군령권에 근거하지 않고 측근 지휘관의 부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여 반란수괴음모 및 반란수괴예비

○ 고발인 군인권센터는 피의자 등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 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으로 이어지는 적법한 군령권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므로 군형법 제8조가 규정한 반란음모 및 반란 예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이 또한 피의자가 군령권을 잠탈할 의도로 본건 계엄 문건을 작성하였는지 등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 이유, 목적, 군령권 잠탈을 위한 구체적 준비행위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기소중지한다.

4. 피의자 조현천은 ① 지영관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로 하여금 '안보·보수세 관리방안' 및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방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 18회 개최 및 칼럼·광고 54회 게재 등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② 2016. 1.경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로 하여금 자유총연맹 선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유총연맹 선거 분위기를 확인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③ 지영관과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로 하여금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을 유포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러한 의견을 유포하도록 하면서 기무사의 자금 3,000만원을 사용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④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이상 3인은 같은 날 군검찰에서 불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허위 내용의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 계획' 및 '특근매식비 예산신청 의뢰'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⑤ 지영관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6. 5.경

까지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계획예산과장 최근대 등에게 사업계획서 등
근거없이 돈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하여 대외정책첩보소재개발비로 3,000만원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횡령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

○ 기소중지한다(지영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에
재배당함).

검사

(인)

(수사참여검사 : 전준철, 김영철, 이찬규, 이일규, 유효제, 엄영욱)